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다단계판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다단계판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CONTENTS

다단계판매, 제대로 알아보자 _ 04

다단계판매란?
피라미드 판매와의 구분

조심 또 조심하자 _ 06

피해 사례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6대 수칙 _ 08

01_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한다
02_관할 시 · 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03_공제번호를 확인한다
04_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05_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한다
06_공제조합에 등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다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는 이곳에서 _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소비자홈페이지
관련 기관

다단계판매, 제대로 알아보자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판매 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입니다.

피라미드 판매와의 구분

	다단계판매	피라미드판매
사업 소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해 볼 것을 권유하며 검증할 수 있는 회사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다단계판매 방식임을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의 대량구매를 유도
가입비	없음	각종 명목으로 금품 징수
물건 전달	주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	판매원이 판매 과정에서 직접 물건을 개봉해 훼손함으로서 반품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품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물건을 상위사업자가 보관해 반품을 방해함
사업 설명회	회사가 관리 · 감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짐	폐쇄적인 공간에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 공동 숙소에 묵으며 사업을 진행
수당	본인의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후원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지급 기준	오로지 새로운 회원모집을 통한 수당 지급
환불	환불제도 확실	환불제도 미비 또는 없음
피해 보상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 가능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불가능

● 회사에 대하여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지는 않았나요?
- 교육장소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교육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시키지는 않나요?
- 회원 가입시 일정 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물건 구매를 강요, 혹은 상위판매원으로의 진급을 유혹하며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암묵적으로 종용하지는 않았나요?
- 회사나 물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지는 않았나요?
- 친구나 친지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을 계속 주입하는 교육을 하지는 않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거나 회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에 대하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상태인가요?
-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있으며 가족, 친지, 친구, 주의 사람들과 의논해 보았나요?
- 나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람을 정말 믿을만합니까?
- 과연 교육내용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여 생활, 건강이 윤택해지나요?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건을 구매하지 않거나 회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심 또 조심하자

피해사례

●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직 등 일자리를 빙자해 판매원 모집

천안에 사는 L군(22살, 대학생)은 친구로부터 병역특례 일자리 소개를 연락받고 서울에 있는 F사의 교육을 받았다. 이 회사는 빠르면 한 달, 오래 걸리면 3년 안에 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L군은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40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 구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받았다.

● 과다한 후원수당 지급을 약정하며 판매원 모집

김씨(65세)는 퇴임 후, 투자하면 원금의 25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평생 모은 6억원을 J사에 투자했다. 그 후 3개월간 꼬박 후원수당이 통장으로 들어왔으나 그 이후부터 수당이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새로운 투자를 요구했다. 그 말에 김씨는 친인척들의 돈을 끌어 모아 투자했으나 다시 수당이 끊어졌다. 약속한 250%에 해당하는 고수익은 고사하고, 투자원금마저 깡통이 됐다.

※ W사 대표 안 모씨 등은 0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투자를 하면 투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모두 12만6천여 회에 걸쳐 2천259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

방문판매회사인 N사 대표 정 모씨 등은 하위 직급자를 모아 출자하면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1000억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05년 10월부터 06년 5월 말까지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출자를 하면 약속한 기한 내 출자 원리금과 수당을 주고 하위 직급자 유치 실적 및 출자금액에 따라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홍 모씨 등 9900여명으로부터 103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물건의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달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물건 구매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의 거래없이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재기, 강제 구매 등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위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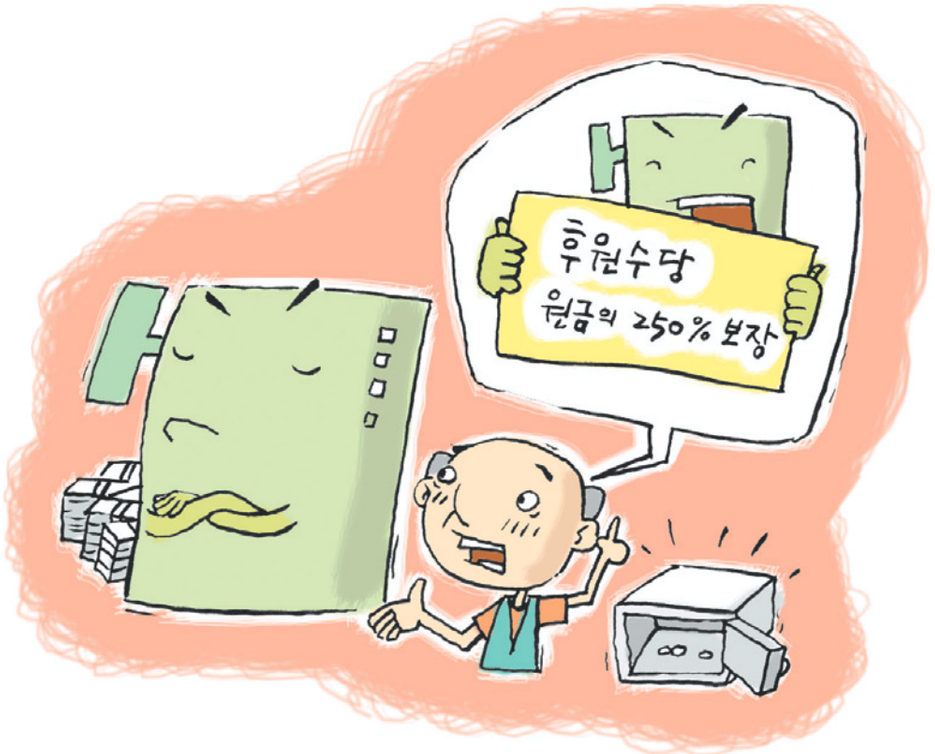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6대 수칙

다단계판매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권유받는다면, 다음 6대 수칙을 꼭 확인하세요!!!

수칙 1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통해 다단계판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회사의 매출액,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체크합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제3장 다단계판매에는 청약철회,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금지행위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자료마당 → 방문판매 → 법률**' 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
다단계판매의 개념, 소비자보호사항, 위법행위 등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자료마당 → 방문판매 → 지침**' 또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메인화면 중앙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
2003년부터 매년 다단계판매 회사의 매출,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GO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 회사별, 년도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칙 2 관할 시 · 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반드시 관할 시 · 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 본사가 있는 해당 시 · 도에 회사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의 '가입사 조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의 '조합사 안내'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칙 3 공제번호를 확인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
- 물건 구매시 받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명시
-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메인화면 좌측 하단 '**공제번호 조회**' 또는 전화 02-566-1202 **보상팀**으로 문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 '**판매 / 소비자 → 보증서 조회**' 또는 전화 02-2058-0831 **조사보상팀**으로 문의

수칙 4 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제품 반환, 판매원의 탈퇴 등이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해당 회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수칙 5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한다

물건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비자는 14일,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물건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고 싶은 경우, 해당 회사에 물건을 반환하고 반품 확인증을 받거나 반품 하는 물건과 함께 반품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수칙 6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추후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반품 처리를 못해 줄 경우, 공제조합 등을 통해 이를 대신합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신청방법을 숙지하고 구비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는 이곳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자료마당 → 방문판매 → 법률 또는 지침'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총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내역, 취급 품목, 소비자 불만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주소변경, 휴업 · 폐업 및 등록취소 등 주요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우측 중앙 'GO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

소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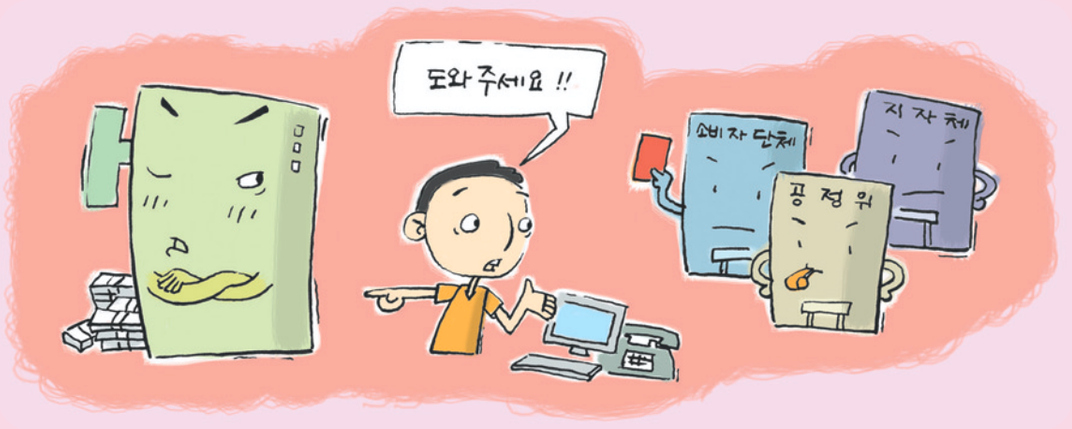

관련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02-2110-4851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02-3140-9657	(150-7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서울증권빌딩 19층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소비자과	051-466-3246	(600-7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 부산우체국 8층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062-225-8459	(501-0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9층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비자과	042-476-1349	(302-708)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2 대전상공회의소빌딩 6층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소비자과	053-742-9148	(706-7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02-503-2387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42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2799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부산광역시 유통소비과	051-888-3041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429-3221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042-600-2212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과	062-613-3734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33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경기도 경제항만과	031-249-4591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강원도 유통소비과	033-249-3475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충청북도 경제과	043-220-3122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2-220-3213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063-280-3256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전라남도 기업지원과	062-286-3863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	053-950-3213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055-211-3134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3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02-313-0742,45	(120-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137-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직접판매공제조합	02-566-1202	(135-53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새마을금고연합회관 12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24-1 베델회관 8층
한국직접판매협회	02-508-5114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7-8 평화빌딩 3층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02-567-8411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206호
자율분쟁조정위원회	02-774-4154	(100-02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MCA 빌딩 701호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9621	(110-7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 서울YMCA 별관 101호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02-885-2870	(151-0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5-1 관악캠퍼스타워 504호
서민고통신문고	02-3486-0253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9 동성빌딩 301호